



“너는 부모도 없느냐” 정도의 표현은 모욕죄 아니다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발언은 상당한 요구에 참기 어려운 욕설로 응대한 상대방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연립주택의 건물주로 “욕실 수도를 계속 틀어 놓아 수도요금 많이 나왔다”며 세입자인 원고 집 안의 계량기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원고에게 “야 꼴통 X X야,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네 방에서 내쫓고 말거다”라고 욕설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기재된 욕설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모욕죄에 관한 기준을 설명하면서 “‘너는 부모도 없느냐’ 정도의 표현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KISO,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할 수 없는 국가기관 범위 확정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는 10월 23일 인터넷 게시물 관련 삭제 요청을 신청할 수 없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범위를 확정 발표했다.

KISO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권의 주체라기보다는 몸소 모범을 보이는 기관이라는 것이 관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립되어 있다”며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없는 기관들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KISO는 삭제 요청 제외 대상 국가기관을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른 광역, 기초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함), 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면, 동, 리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정했다. 다만,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기관장이나 구성원이 개인 자격으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KISO는 지난 6월 29일 정부기관이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임시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게시물 삭제 요청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블라인드(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30일이다.

KISO는 지난 3월 3일 NHN, 다음, 야후, SK커뮤니케이션즈,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국내 주요 7개 포털사들이 모여 결성한 자율규제정책기구다.

“공공장소 집회 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 침해 아니다”

언론사가 공공장소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 참가자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여 보도했다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오 모 씨가 기독교 인터넷 신문 ‘뉴스엔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촬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왜곡보도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 오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 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결부된 기사가 부정적인 인상

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도의 한계를 두었다.

오 씨는 뉴스엔조이가 자신이 이단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시위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 보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술자리 거짓말’ 유죄 인정, 법원 벌금형 선고

술자리에서 한 거짓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부는 술자리에서 대학 후배 A 씨(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후배들에게 “나와 예전에

사귀 A는 지금 다른 남자와 사귀다”고 거짓말을 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2006년 4월 A 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A 씨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6월 동부지법에서 열린 원심은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윤 씨의 대화는

단순한 잡담에 불과하고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임을 알면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했다.

‘특정 종교와 국적의 외국인 혐오’ 모욕죄 인정

법원이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인종차별적 내용의 발언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부는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

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술에 취한 박 씨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을 준 혐의로만 기소해 이를 판단했을 뿐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욕죄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일 뿐 일반 모욕죄 기소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판단이 인종차별 발언을 모욕죄로 인정한 사례

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버스에서 영어로 한국인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던 ○○○ 후세인 성공회대 교수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난다” 등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 약식 기소란 피의자의 혐의가 크지 않을 때 검사가 기소는 하되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종 어린이 부모, 실종사건에 부모 연관설 주장한 사이트 폐쇄 요구

2007년 포르투갈에서 실종된 영국 어린이 Madeleine McCann의 변호인이 'Madeleine은 이미 사망했으며, 그녀의 부모가 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Madeleine의 부모 Kate와 Gerry McCann은 런던의 로펌 'Carter-Ruck'을 통해 Madeleine의 실종이 자신들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해 온 MadeleineFoundation.org라는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McCann 가족의 대변인 Clarence Mitchell은 "Kate와 Gerry는 그 동안의 자신

의 자녀 실종과 관련한 Madeleine Foundation의 논평과 행동들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로펌과 변호사들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현재 McCann 측은 소송을 위해 Madeleine Foundation에 현재까지 발행한 책자와 광고 전단지뿐 아니라,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Madeleine은 실종 당시 4세였으며, 그녀의 가족이 임대한 Praia da Luz의 휴가용 아파트에서 2007년 5월 그녀의 부모가 친구들과 아파트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사라졌다.

이와 관련하여 「Express Newspapers」는 지난해 3월 Madeleine의 실종과 죽음이 그녀의 부모인 Kate와 Gerry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해 550,000 유로를 배상한 바 있다.

한편 2008년 7월에는 네 개의 신문사가 포르투갈 경찰에 의해 Madeleine의 실종 관련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Robert Murat에 대한 보도를 하여 결국 그와 수십만 유로에 달하는 명예훼손 관련 배상합의를 하기도 했다.

(Press Gazette 2009년 9월 23일자)

통신사의 기사를 게재한 지방신문 기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쿄여자의과대학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여자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다룬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담당의사가 共同(교도)통신사와 통신사의 기사를 받아 게재한 「秋田魁」, 「上毛」, 「静岡」 등 3개 지방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쿄고등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기사의 진실상당성을 인정, 교도통신의 배상책임은 부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신문이 게재한 통신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지방신문들이 교도통신사가 필요한 취재활동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믿을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3개 지방신문사가 게재한 기사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7년 9월 도쿄지방법원은 교

도통신의 전송기사에 대해서는 진실상당성을 인정했으나, 지방지가 받아 쓴 기사는 "통신사의 기사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사 게재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3개 지방 신문에 모두 385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기사는 교도통신이 2002년 7월 '최악의 사태, 왜?' 제하로 전송한 기사로 1, 2심 재판부는 모두 기사는 진실이 아니나, 교도통신이 수사본부 등을 직접 취재하는 충분한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진실상당성을 인정, 교도통신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가 '독립된 책임주체'로 규정한 지방지와 교도통신과의 관계에 대해 "지방지는 교도통신의

운영자금을 부담하면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고, 교도통신은 국내외에서 취재한 기사를 지방지의 신문제작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상호관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교도통신이 기사의 확인체계 등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방지는 교도통신이 취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 3개 지방지의 명예훼손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통신사를 한 쪽의 핵(核)으로 하는 보도시스템은 국민에게 널리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유용하며, 지방지의 존립기반이기도 하다"며 "정보 전달매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전 담당의사 측은 지난 8월 7일 상고했다.

(新聞協會報, 2009년 8월 11일자)

미국 언론사들 영국에서의 명예훼손 소송 위험을 이유로 사업 철수 의견 영국하원에 보내

악명 높은 영국의 명예훼손법으로 인해 미국의 신문사와 잡지사들이 영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Boston Globe」, 「New York Times」, 「Los Angeles Times」 등을 포함한 미국의 신문사들은 영국 하원의 미디어 선정 위원회에 문서를 보내 영국 내에서의 명예훼손 소송 위험 때문에 사업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Sunday Times」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미국의 유력 신문들이 영국에 체류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출판물에 대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은 “미국 신문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이익을 위해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수백만 달러 명예훼손 소송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또 신문은 “그들이 영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요 미국 신문이 출판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 시대에 맞게 영국의 명예훼손법을 개정하기 위한 심의 중에 있으며, 12월 6일 종료하게 되어 있는 심의 회의는 인터넷에서 기사를 다운로드 할 때마다 새로운 출판으로 보는 현재의 명예훼손법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국의 명예훼손법을 공범 위하게 개혁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현재 ‘승소 조건부 비용지급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영국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언론사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어 명예훼손 소송을 위한 최고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반대로 언론사에게는 명예훼손 방어를 위한 진실 입증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게 지워지고 있다.

「Press Gazette」가 주최한 작년 ‘미디어 법 회의’에서는 언론사가 주요 명예훼손 소송 방어에 쓴 비용이 240만 파운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영국을 찾고 있으며, 현재의 법률 하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이 단지 영국의 독자들의 자신 관련 기사를 다운로드 하고 있거나 영국에서 그 내용이 출판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Press Gazette 2009년 11월 9일자)

英 온라인 명예훼손법 개정, 언론에 희소식 될 것

온라인 명예훼손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언론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정부는 인터넷 기사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 시효기간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인터넷 기사는 다운로드 될 때마다 하나의 새로운 출판물로 보게 되어 있어 1년으로 되어 있는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일반적 시효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 전문 변호사 Jaron Lewis는 “현행법은 인터넷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단일출판규정(이에 따르면 매 다운로드 시가 아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이 적용되게 된다.)’이 이미 도입되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전문변호사 Caroline Kean도 “현행법은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에 맞

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므로, 일련의 심의 과정을 거친 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제안한 개정법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Kean 변호사는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기사 소스도 남아 있지 않고, 취재원도 찾을 수 없어 수년 전 쓴 기사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갑자기 해당 기사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라며 “현행법 체제 하에서는 기사를 작성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법적 방어를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한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시효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당해 기사가 보도된 시점이 아니라,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그 기사가 보도된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Russell Jones and Walker’의 미디어 및 명예훼손 부문 책임자 Sarah Webb은 “인터넷의 특성상 자료가 반영구적으로 온라인상에 남는다는 점과 무한대로 반복 다운로드(즉, 출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소멸시효는 적정 수준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전문변호사 Lewis도 “인터넷 상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현실적으로 해당 기사가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게 되므로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시효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기사를 다운로드 할 때마다 새로운 출판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은 1849년 Brunswick의 한 공작이 18년 전 영국 신문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사실을 안 뒤, 자신의 하인을 대영박물관으로 보내 그 기사를 찾게 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에서 기원한다.

명예훼손 및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인 David Hooper는 "19세기 중반 몇몇의 사건을 바탕으로 인터넷 관련 법을 제정한 것 자체가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며, 진짜 문제는 수십 년 전 과거의 일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기사에 대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도와 관련하여 시간이 흐른 후 정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 기사나 출판물에 내용을 추가하여 후대 사람들이 양 측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으로부터 벗어나는 합리적인 균형점"이라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9년 9월 21일자)

영국 정부, 언론의 자유 위축되지 않도록 명예훼손 소송비용 제도 개선안 마련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막대한 명예훼손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소 조건부 비용지급 규정(불승소 무비용 원칙)'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는 수천 달러에 불과한 경우라도, 언론사는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해 왔다. 이로 인해 언론사들은 막대한 소송비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송 이전에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언론사가 지불해야 하는 명예훼손 소송비용 제한을 위한 세 가지 개선점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 청구에 대한 조기 통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소송 제기자가 패소에 대비해 납입한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즉시 언론사에 통지해야 한다. 현재 언론사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의 지속 기간에 따라 보험료는 2,000 파운드에서 50,000 파운드에 이른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언론사가 상대방이 보험에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자의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언론사는 보험료 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을 경우 42일간의 조정 기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 언론사가 소송 제기인과 합의할 경우에는 언론사는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소송비용에 대한 항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명예훼손 소송비용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제도의 운영으로 소송비용이 불합리하게 증액되는 것이 방지될 것으로 보이며, 소송비용은 차후 법적 절차에도 참고자료로 사용되게 된다.

법무부의 새로운 조치들이 '승소 조건부 비용지급 규정'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소송 제기자 측 변호사가 패소한 언론사에 두 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성공사례금제도이다.

법무부 장관 Jack Straw는 9월 24일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진실을 추적하는 보도는 민주주의 가치의 근간에 해당하며, 정부는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성공사례금을 제한하는 제도에 관한 논의 결과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불필요하게 높게 산정된 소송

비용이 명예훼손 소송의 당연한 특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패소한 언론사가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포기하고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한 성공사례금과 보험금 제도는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 "소송 제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에는 방어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사실을 통지받고 소송 제기자의 보험금 납입 의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고자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기초적인 단계로 앞으로도 비용 관련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적극적으로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Press Gazette'는 '승소 조건부 비용지급 규정'으로 인한 언론사의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이 언론의 자유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다.

(Press Gazette 2009년 9월 24일자)

도쿄고법, 사회적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한 표지나 광고 표제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되지 않는다

도쿄고등법원은 キヤノン(캐논)과 동사의 御手洗富士夫 회장이「週刊現代」(슈칸겐다이)의 발행사인 講談社(고오단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사와 표지 및 광고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 2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캐논과 御手洗富士夫 회장은「週刊現代」가 기사와 표지 및 광고를 통해 회사와 자신이 구 일본군의 731부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

가 훼손되었다며 2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週刊現代」 2007년 10월호의 「캐논 御手洗 회장과 731부대」제하 표지 및 신문광고이며, 재판부는 표지 및 광고의 표제에 대하여 “사회적인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한 생략이나 과장은 인정된다”며 “御手洗 회장과 부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문언(文言)으로 되어있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했다.

1심 판결은 표지 및 광고의 표제에 생략이나 과장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근거 없이 원고와 부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암시하였고, 이는 사회적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1심, 2심 모두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캐논 측은 지난 7월 29일 상고했다.

(新聞協會報, 2009년 8월 11일자)

직접취재 및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없다

건강기구 「ロデオボ-イⅡ」(로데오보이Ⅱ)를 소개한 통신판매 프로그램 내용이 날조라고 보도한 「週刊現代」(슈칸겐다이)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TV朝日(아사히)가 講談社(고오단샤)와 집필자 등을 상대로 1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8월 28일 명예훼손을 인정, 330만 엔의 지

불을 명했다. 講談社 측은 지난 9월 8일 항소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2007년 7월 14일 호부터 3회에 걸쳐 게재된 ‘激ヤセ捏造’ (급감량 날조)라는 제하의 내용이며, 이 가운데 2회는 전 TV朝日 사원이 제작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출연자는 바람잡이로 1kg 감량되면 1만

엔을 받는 계약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기술했다.

재판부는 전 TV朝日 사원이 프로그램의 출연자에게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週刊現代」의 편집부도 독자적인 확인취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新聞協會報, 2009년 9월 15일자)

‘보도실현권’ 2심에서도 청구 기각

취재, 집필한 원고가 게재되지 않아 기자의 권리가 부정되었다고 전 朝日(아사히) 신문 기자 吉竹幸則 씨가 朝日신문사를 상대로 사죄 기사 게재와 위자료 3,000만 엔의 지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나고야고등법원은 지난 9월 2일 “기자에게는 원고를 게재하도록 신문사에 요구할 권리는 없다”며

1심 (언론중재 2009년 가을호 96쪽 참조)과 동일하게 청구를 기각했다.

요시다케 씨는 신문이 자신이 쓴 원고를 게재하지 않자 ‘보도실현권’(報道實現權)이 침해되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신문사는 일정한 수준에 있는 원고를 게재할 의무가 있다며 제소했다.

재판부는 “편집권은 신문사의 경영, 편집 관리자에게 있으며 기자의 원고나 취재결과는 소재(素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각사의 편집방침에 따른 신문보도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고 있다”고 판시, 보도실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新聞協會報, 2009년 9월 29일자)